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묘지 인근에 일정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국립묘지별 안장자격과 관계없이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42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 국립묘지 인근에 일정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국립묘지별 안장자격과 관계없이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 ...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출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출일 : 2025. 7. 11.
3. 회부일 : 2025.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의 안장 대상자보다 조건 등이 제한되어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현충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음.

이는 지역 주민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생전에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기여해 온 점과 유족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국립묘지 인근에 일정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국립묘지별 안장자격과 관계없이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

□ 개정안은 국립묘지 인근에 일정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국립묘지별 안장자격과 관계없이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⑦ (생략) <u><신설></u>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의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국립묘지 인근 지역의 범위, 거주 기간, 보훈 대상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은 제3조에서 국립묘지를 구분(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하여 나열하고 있고, 제5조제1항에서 국립묘지의 종류에 따라 안장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음.¹⁾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 2. 국립대전현충원 /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19민주묘지 / 5. 국립3·15민주묘지 / 6. 국립5·18민주묘지

다만, ‘국립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효율적인 국립묘지 운영을 위해 호국원 안장대상자 뿐만 아니라, 현충원 및 민주묘지 등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도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구분>

구분	지역	안장대상
현충원 (2곳)	서울, 대전	①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및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②독립유공자, ③전사·순직한 군인, ④무공수훈자, ⑤장성급 장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⑥전사·순직한 경찰관·예비군대원, ⑦전공상군경, ⑧위험직무 순직·상이 소방공무원, ⑨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⑩의사상자, ⑪교정·산불진화 등 위험직무 중 순직공무원, ⑫국가유공자인 순직·공상(1~3급)공무원 중 위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 나. 국립임실호국원 / 다. 국립이천호국원 /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각 호 생략)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지역	안장대상
		협군무수당 수급자 ⑬국가사회공헌자, ⑭독도의용수비대원
호국원 (6곳)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①국가유공자 중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②참전유공자, ③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④장기재직 경찰·소방공무원
민주묘지 (3곳)	서울, 창원, 광주	①4·19민주유공자, ②5·18민주유공자
신암선열공원 (1곳)	대구	독립유공자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묘지별 구분>

구분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구성 취지	6·25전사자 안장을 위해 조성	재향군인회가 향군참전군인묘지로 조성하여 참전유공자를 안장	각 지체체가 4·19 및 5·18 관련 민주유공자를 안장
연혁	국방부에서 6·25전사 무명용사 안장을 시작으로 애국지사, 전사·순직 경찰관, 대통령, 독립유공자 등을 안장. 현재는 국가보훈부에서 관리운영	국가보훈부에서 관리운영을 이전받아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기재직 경찰·소방관 등을 안장	국가보훈부에서 관리운영을 이전받아 4·19 및 5·18 민주운동 관련 유공자를 안장
특성	신체적 희생과 국가사회 공헌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을 안장하고 선양	신체적 희생이 없는 참전유공자와 장기간 국가·사회를 위해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기림	민주유공자분들을 안장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고 기림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하고 있는바,

생전 지역사회 기여와 유족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그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국립묘지별 특성 및 일부 묘지의 집중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립묘지는 설립 취지와 그동안의 연혁으로 국립묘지별 서로 다른 안장대상자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거주지 인근이라는 이유로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되면 그간 유지되어 온 국립묘지별 특성과 상징성이 희석될 우려가 존재하는바, 현충원·민주묘지 안장대상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일부 묘지로의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생존 안장대상자의 약 23%가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권 국립묘지 지역 거주자로, 인근 묘지 안장이 허용될 경우 서울·대전 현충원 및 4·19, 5·18민주묘지로의 안장이 집중될 우려가 존재함.

- 2025년 10월말 기준 서울 및 대전현충원의 잔여기수는 58,895기로 생존 안장대상 176,899명 대비 118,004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민

주묘지 또한 잔여기수는 1,486기로 생존안장대상 3,852명 대비 2,366기가 부족한 상황임.

<현충원 및 민주묘지 안장여력 현황>

(‘25.10.31.기준)

구분	안장 현황			생존 안장대상	과부족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합 계	260,927	200,546	60,381	180,751	△ 120,370
현충원	257,766	198,871	58,895	176,899	△ 118,004
민주묘지	3,161	1,675	1,486	3,852	△ 2,366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해 국립묘지별 특성과 상징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권역별 국립묘지 조성 취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1

국립묘지 현황

□ 광역자치단체별 생존 안장대상자 현황

(‘25.10.31.기준)

구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합계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총계		335,080	176,899	154,329	3,852
수도권 강원권	서울특별시	55,562	26,945	27,997	620
	경기도	84,016	45,520	37,919	577
	인천광역시	17,773	7,900	9,793	80
	강원도	16,835	10,059	6,729	47
	소계	174,186	90,424	82,438	1,324
	비율(%)	52.0	51.1	53.4	34.4
대전 충청권	대전광역시	10,155	6,250	3,864	41
	충청남도	14,584	7,743	6,797	44
	충청북도	10,488	5,788	4,666	34
	세종특별자치시	3,076	2,149	906	21
	소계	38,303	21,930	16,233	140
	비율(%)	11.4	12.4	10.5	3.6
대구 경북권	대구광역시	14,299	8,805	5,452	42
	경상북도	17,926	10,175	7,718	33
	소계	32,225	18,980	13,170	75
	비율(%)	9.6	10.7	8.5	1.9
부산 경남권	부산광역시	22,697	11,149	11,485	63
	경상남도	21,590	11,507	10,018	65
	울산광역시	4,896	2,749	2,131	16
	소계	49,183	25,405	23,634	144
	비율(%)	14.7	14.4	15.3	3.7
광주 전라권	광주광역시	9,861	5,087	3,331	1,443
	전라남도	13,368	6,960	5,829	579
	전라북도	12,050	5,850	6,075	125
	소계	35,279	17,897	15,235	2,147
	비율(%)	10.5	10.1	9.9	55.7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3,907	1,891	2,003	13
	소계	3,907	1,891	2,003	13
	비율(%)	1.2	1.1	1.3	0.3
기 타(해외거주, 주소불명 등)		1,997	372	1,616	9
비율(%)		0.6	0.2	1.0	0.0

참고2

국립묘지 조성 현황

○ 신규조성 국립묘지 현황

구분	사업 위치	부지면적	조성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천현충원	경기도 연천군	957,570m ² (29만평)	5만기	'19~'27(8년)	1,291억원
횡성호국원	강원도 횡성군	390,000m ² (11.8만평)	2만기	'23~'28(6년)	497억원
장흥호국원	전라남도 장흥군	340,209m ² (10.3만평)	1.3만기	'24~'29(6년)	418억원

○ 권역별 국립묘지 조성 계획

(‘25.10.31.기준)

구분	안장 현황			생존 안장대상	과부족 (‘25.9.30.현재)	확충계획 (~‘29년)	과부족 (~‘29년)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합 계	574,802	384,873	189,929	335,080	△ 146,198	83,000	△ 63,198
현충원	257,766	198,871	58,895	176,899	△ 118,004	50,000	△ 68,004
호국원	314,421	185,920	128,501	154,329	△ 25,828	33,000	7,172
민주묘지	3,161	1,675	1,486	3,852	△ 2,366	-	△ 2,366